

제5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8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9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는 공보,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배구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